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3일, 한지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2025. 9. 22.)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 9. 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한지아의원)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
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
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개정안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 시 안전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고용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리필을 통해 화장품 용기 재사용 등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여 자격증 취득자의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련 단체의 반대의견이 있어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2018. 3. 13. 개정, 2020. 3. 14. 시행)이 시행된 지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용규제 개선의 실효성과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맞춤형화장품은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품목이었던 샴푸, 린스, 액체 비누, 바디클렌저 등 소분이 가능한 일부 대용량 화장품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하며, 한정된 품목에 대한 단순 소분 업무만을 대체하도록 규정할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전문성이나 자격 범위를 제한할 우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개정안 제3조의2제2항 단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소분 시 안전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교육에 대해서는 전부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강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교육의 내용, 방식 및 실시기관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위임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관련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신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경우를 리필판매만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종업원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종업원이 받아야 할 교육에 관한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교육의 실시기관·방법 및 이수증 발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3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2제2항 단서 중 “제2조제3호의2나목에 해당하는”을 “제2조제3호의2나목의”로, “화장품을”을 “화장품만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소분 시 안전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을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관련 법령
2.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사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방법 및 이수증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안 제5조제7항 중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는 종업원”을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으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제1호의3 중 “전단”을 “본문”으로, “제3조의2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3 중 “제3조의2제2항”을 “제3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u>다만, 제2조 제3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u>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 ----- ----- ----- ----- ----- ----- ----- ----- <u>제2조 제3호의2나목의</u> ----- ----- <u>화장품만을</u> ----- ----- ----- ----- <u>화장</u>

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소분 시 안전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관련 법령
2.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사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방법 및 이수증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게 판매하는 화장 품에 한한다.	----- -----.	----- -----.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 음)	1.1의2. (개정안과 같음)
1의3. 제3조의2제2 항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조제관 리사를 두지 아 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의3. 제3조의2제2 항 전단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 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 업원을 두지 아 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의3. ----- -- <u>본문</u> ----- ----- ----- <u>같</u> <u>은 항</u>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 음)	2. ~ 4. (개정안과 같음)
② 누구든지(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를 통하여 판매하 는 맞춤형화장품판 매업자 및 제2조제 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 적으로 제조된 화 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② 누구든지(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 항 단서에 따른 종 업원을 통하여 판 매하는 맞춤형화장 품판매업자 및 제2 조제3호의2나목 단 서에 해당하는 화 장품 중 소분 판매 를 목적으로 제조	② (개정안과 같음)

용기에 담은 내용
물을 나누어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영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등록
을 취소하거나 영
업소 폐쇄(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
한 영업만 해당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
위에서 기간을 정
하여 그 업무의 전

된化粧품의 판매
자는 제외한다) 화
粧품의 용기에 담
은 내용물을 나누
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

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 제3호 또는 제14호(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1. ~ 2의2. (생략) 2의3.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u>제3조의2제2항</u>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 14. (생략) ② (생략)		----- ----- ----- ----- ----- ----- ----- ----- ----- -----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 ----- <u>제3조</u> <u>의2제2항</u> 본문-- ----- ----- 3. ~ 14.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2나목 본문의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관련 법령
2.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사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방법 및 이수증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을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및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의3 중 “제3조의2제2항”을 “제3조의2제2항 본문”으

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3 중 “제3조의2제2항”을 “제3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6조제1항제1호 · 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제16조제1항제1호 · 제1호의2 · 제1호의3 또는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u>단서 신설</u> >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u>. 다만, 제2조 제3호의2나목 본문의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化粧品の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다.</u> <u>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화장품 관련 법령</u> <u>2.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u>
<u><신설></u>	

<u><신 설></u>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① ~ ⑥ (생략) ⑦ <u>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는</u>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⑧ ~ ⑩ (생략)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化妆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化妆품에 한한다. 1. 1의2. (생략) 1의3. <u>제3조의2제2항에</u> 따른 <u>맞</u>	<u>사항</u> 3. <u>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u> <u>사항</u> ④ <u>제2항 단서에 따른 化妆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방법 및 이수증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및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은</u>----- ----- -----.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u>제3조의2제2항 본문</u>-----
--	---

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
장품

2. ~ 4. (생략)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
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
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
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
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

---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종
업원을-----

2. ~ 4. (현행과 같음)

②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
서에 따른 종업원을-----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